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021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5조의2에 따른 ‘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’의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12. 31.

국토교통부장관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공사 발주청이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시 준비기간, 비작업일수, 작업일수, 정리기간 등 공사기간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

2. 기타 :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의 법령정보(훈령・예규・고시란) 참조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공사기간의 결정 절차) ① (생 략)	제4조(공사기간의 결정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,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.	② ---------- 공사기간의 적정성(제6조에 따라 공사기간에 포함되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포함한다)을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<신 설>	1. 제7조에 따른 측량, 자재·장비 조달 기간 등을 고려한 준비기간
<신 설>	2. 제8조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폭염, 폭우, 혹한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한 비작업일수
<신 설>	3. 제11조에 따른 현장 여건, 공사규모 등을 고려한 작업일수
<신 설>	4. 제12조에 따른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정리기간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공사기간 적정성 검토) ① (생 략)	제14조(공사기간 적정성 검토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20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	제20조(재검토기한) ---------- ----------

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---------- 2025년 1월 1일----------.